

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

판 결

사 건 2024고정21 재물손괴
피 고 인 A
검 사 정현혁(기소, 공판)
변 호 인 변호사 서영규(국선)
판 결 선 고 2024. 11. 13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이 유

1. 공소사실의 요지

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서 'C'라는 상호로 막걸리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 피고인은 2023. 7. 28.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이르러, 위 건물 외벽에 피해자가 설치한 '본 건물 철거예정. 23년 4월 매매 후 내부 건물을 치우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, E는 건물 내 무단 점유중인 가재도구 및 자재 등을 치워주기 바라며, 무단 출입 및 무단 주정차 금지 기타 모든 행위 일체를 금합니다'라고 기재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현수막(이하 '이 사건 현수막'이라 한다)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.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



손괴하였다.

2. 판단

가. 피고인 주장의 요지

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자이므로 피해자가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건물을 출입하기 위해 떼어낸 행위는 정당행위, 정당방위에 해당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1)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'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'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,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,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,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, 긴급성,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 한편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, 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(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).

2)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'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'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①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이 소유자였다가 2022. 10. 7.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, 피해자는 2023. 5. 4.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. 즉,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, 피고인 또한 위 건물을 적법하



게 점유를 개시한 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.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점유개시가 적법하였던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에 따른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.

②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막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.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위 현수막을 떼어내야지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(증거기록 제10쪽), 이러한 피해자의 현수막 설치행위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.

③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지만, 이는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달성해야지,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점유를 방해하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.

④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내 보관한 행위는 그와 같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적합하고, 최소한의 침해행위로 보인다.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 이후 위 현수막을 1시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다시 설치하기도 하였다(증거기록 제45, 54쪽)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,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.

판사 김선익 _____